

## 2021.06.05. 서울시 및 지방직 [지방세법] 9급 A책형

대방고시학원 세법 박창한

총평

서울시 시험문제가 지방직 시험문제와 동일하게 출제되도록 변경된지 2번째 해입니다. 올해 시험은 문제구성과 난이도가 예년과 많은 차이가 있는 해라고 판단됩니다.

문제구성은 지방세기본법 7문제(서류의 송달, 납세의무의 확정 및 소멸, 납세의무의 확장,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지방세환급금, 납세담보, 과세전적부심사), 지방세징수법 1문제(공유재산의 공매), 지방세법 10문제(취득세 세율특례, 등록면허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납세절차등, 자동차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지방세특례제한법 2문제(조례에 따른 지방세감면, 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한 면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예년에는 주요 세목인 취득세와 재산세에서 각각 2~3문제씩 출제되었으나 올해에는 모든 세목에서 구분없이 각각 1문제씩 출제되었다는 것이 문제구성의 특이사항이며, 또한, 난이도에 있어서도 '옳은' 지문을 찾는 문장이 많아서 상대적으로 더 어렵게 느껴지고 시간도 더 걸리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올해에도 2년째 계속되는 코로나 등 수험생들에게 여러가지로 어려운 여건이었습니다. 시험보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여러분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문제 풀이 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령과 이에 근거한 위임 조례는 고려하지 아니한다.

- 문 1. 「지방세기본법」상 납세의무의 확장 및 보충적 납세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법인에 부과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대하여는 납부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
  - ② 공유물(공동주택의 공유물은 제외한다), 공동사업 또는 그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 ③ 법인이 해산할 때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남은 재산을 분배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더라도 징수할 금액이 부족한 경우 청산인은 부족한 금액 전부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 ④ 사업양수인은 양도일 이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할 때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정답 1 ②

- ①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③ 법인이 해산한 경우에 청산인의 제2차 납세의무는 청산인에게는 분배하거나 인도한 재산의 가액을, 남은 재산을 분배받거나 인도받은 자에게는 각자가 분배·인도받은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한다.

④ 사업의 양도·양수가 있는 경우 그 사업에 관하여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양도인의 재산으로 총당하여도 부족할 때에는 양수인은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양수한 재산의 가액 한도 내에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문 2. 「지방세기본법」상 서류의 송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연대납세의무자에게 대표자가 없으면 납세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연대납세의무자 중 지방세를 징수하기 유리한 자에게만 송달하여야 한다.

② 서류를 교부하였을 때에는 수령인이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면 그 사실을 송달서에 적어야 한다.

③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사전 반대한 경우가 아니면 전자송달의 방식으로 서류를 송달할 수 있다.

④ 서류를 송달받을 자가 주소, 거소, 사무소 및 영업소 외의 다른 장소를 송달받을 장소로 요청한 경우 그 장소에 송달하여야 한다.

정답 2 ②

① 연대납세의무자에게 서류를 송달할 때에는 그 대표자를 명의인으로 하며, 대표자가 없으면 연대납세의무자 중 지방세를 징수하기 유리한 자를 명의인으로 한다. 다만, 납세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연대납세의무자 모두에게 각각 송달하여야 한다.

③ 전자송달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만 한다.

④ 서류를 송달받을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 중에서 송달받을 장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였을 때에는 그 신고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문 3.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법」상 지방세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재산세의 납세의무는 과세기준일에 성립하며,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②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지방세관계법의 해당 지방세의 세목으로 한다.

③ 환급가산금을 포함한 지방세환급금에 관한 납세자의 권리는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④ 특별징수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징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답 3 ③

지방세환급금(환급가산금을 포함한다)에 관한 납세자의 권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문 4. 「지방세징수법」상 공유재산의 공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공유자가 공매재산인 공유물의 지분을 우선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한 경우에는 매각결정 기일이 지날 때까지 공매보증금의 제공은 필요하지 않다.
- ② 공매재산이 압류된 부부공유의 유가증권인 경우에는 체납자의 배우자는 우선매수권을 가지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③ 체납자의 배우자는 공매재산이 압류한 부부공유의 동산에 해당하는 경우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매각대금 중 공유지분에 상응하는 대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 ④ 우선매수 신고를 한 공유자에게 우선매각결정을 한 후에 그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공매를 집행하는 공무원은 재공매를 하여야 한다.

정답 4 ③

- ① 공매재산이 공유물의 지분인 경우 공유자는 매각결정 기일 전까지 공매보증금을 제공하고 매각예정가격 이상인 최고입찰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공매재산을 우선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할 수 있다.
- ② 체납자의 배우자는 공매재산이 압류된 부부공유의 동산 또는 유가증권인 경우 공매재산을 우선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할 수 있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우선매수 신고를 한 공유자에게 우선매각결정을 한 후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매각예정가격 이상의 최고액 입찰자에게 다시 매각결정을 할 수 있다.

문 5. 「지방세기본법」상 과세전적부심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범칙사건조사를 하는 경우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 ②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지방세 부과 제척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없다.
- ③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 통지를 받은 자가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려는 경우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 ④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정답 5 ③

- ① ②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없다.

1. 범칙사건조사를 하는 경우
3. 세무조사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지방세 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4. 그 밖에 법령과 관련하여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④ 다음의 처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1.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 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통고처분
3.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4.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에 대한 처분
5. 과태료의 부과

문 6. 「지방세법」상 지방소비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지방소비세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에서 「부가가치세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감면세액 및 공제세액을 빼고 가산세를 더하여 계산한 세액으로 한다.
- ② 지방소비세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할 세액을 다음 달 20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납입한 경우에는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지방세기본법」 제56조에 따른 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한다.
- ③ 지방소비세는 「지방세법」 제65조에 따른 재화와 용역을 소비하는 자의 주소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에서 「부가가치세법」 제3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에게 부과한다.
- ④ 지방소비세의 부과·징수 및 불복절차 등에 관하여는 국세의 예를 따르며, 이 경우 지방소비세 특별징수의무자를 그 처분청으로 본다.

정답 6 ②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할 세액을 다음 달 20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납입하더라도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지방세기본법」 제56조에 따른 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문 7. 「지방세기본법」상 지방세환급금 또는 납세담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재산세의 물납(物納) 후 재산세 부과를 취소한 경우 물납재산이 매각된 경우가 아니면 그 물납재산으로 환급하여야 한다.
- ② 지방세환급금의 소멸시효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납세자의 지방세 환급청구를 촉구하기 위하여 납세자에게 하는 지방세 환급청구의 안내·통지 등으로 인하여 중단되지 아니한다.
- ③ 납세담보로 금전을 제공한 자는 그 금전으로 담보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할 수 있다.
- ④ 납세보증보험증권 또는 납세보증서를 납세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그 보험증권 또는 보증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 7 ①

납세자가 재산세를 물납(物納)한 후 그 부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감액하는 결정결정에 따라 환급하는 경우에는 그 물납재산으로 환급하여야 한다. 다만, 그 물납재산이 매각되

었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등 다음에 정하는 경우에는 금전납부의 환급 규정(지방세환급가산금 포함)을 준용한다.

- |   |
|---|
| <ol style="list-style-type: none"><li>1. 해당 물납재산이 매각된 경우</li><li>2. 해당 물납재산의 성질상 분할하여 환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li><li>3. 해당 물납재산이 임대 중이거나 다른 행정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li><li>4. 해당 물납재산에 대한 사용계획이 수립되어 그 물납재산으로 환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li></ol> |
|---|

문 8. 「지방세기본법」상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제출함)

- ①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다.
- ② 수정신고는 지방세의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이면 지방세 부과와 제척기간이 지난 후에도 가능하다.
- ③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 ④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뿐만 아니라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도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한다.

정답 8 ④

- ① ②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 및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그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으로서 지방세 부과와 제척기간이 끝나기 전까지는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 ③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원칙적인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 |   |
|---|
| <ol style="list-style-type: none"><li>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의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li><li>2.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li><li>3.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지방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li></ol> |
|---|

\* 즉, 후발적사유에 의한 경정청구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가 아니라,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이다.

문 9. 「지방세법」상 취득세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취득세액으

로 하지 않는 것은? (단, 취득물건은 「지방세법」 제13조제2항에 해당되지 않고, 제11조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은 제외하며, 지방세특례는 고려하지 않음)

- ① 환매등기를 병행하는 부동산의 매매로서 환매기간 내에 매도자가 환매한 경우의 그 매도자와 매수자의 취득
- ② 공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지 아니함)
- ③ 건축물의 이전으로 인한 취득(이전한 건축물의 가액이 종전 건축물의 가액을 초과하지 아니함)
- ④ 개수로 인한 취득(개수로 인하여 건축물 면적이 증가하지 아니함)

정답 9 ④

중과기준세율 (구 취득세 과세분)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 (구 등록세 과세분)
④ 개수로 인한 취득(개수로 인하여 건축물 면적이 증가하지 아니함)	① 환매등기를 병행하는 부동산의 매매로서 환매기간 내에 매도자가 환매한 경우의 그 매도자와 매수자의 취득 ② 공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지 아니함) ③ 건축물의 이전으로 인한 취득(이전한 건축물의 가액이 종전 건축물의 가액을 초과하지 아니함)

문 10. 「지방세기본법」상 납세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인(상속인이 1인인 경우로 한정함)은 피상속인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
- ②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의 수정신고는 당초의 신고에 따라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하여 확정하는 효력을 가진다.
- ③ 납세자가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경우로서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지방세 부과 제척기간은 7년으로 한다.
- ④ 지방세징수권의 시효는 납세고지에 의해 중단되며, 중단된 시효는 고지한 납부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정답 10 ③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지방세 부과 제척기간은 7년으로 하되, 다음에 따른 취득으로서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년으로 한다.

- 가. 상속 또는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
- 나.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명의신탁약정으로 실권리자가 사실상 취득하는 경우
- 다. 타인의 명의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였지만 해당 주식 또는 지분의 실권리자인 자가 과점주주가 되어 「지방세법」상 과점주주 간주취득 규정에 따라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경우

문 11. 지방세법령상 자동차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 공매되어 매수대금이 납부되었으나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매도인이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 ②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의 세율은 교통·에너지·환경세율의 변동 등으로 조정이 필요하면 그 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감하여 조정할 수 있다.
- ③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덤프트럭과 콘크리트믹서트럭을 말한다.
- ④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이 개시된 자동차로서 사실상의 소유자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사용자, 연장자의 순서로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정답 11 ③

- ①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 공매되어 매수대금이 납부되었으나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매수인이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 ②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의 세율은 교통·에너지·환경세율의 변동 등으로 조정이 필요하면 그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감하여 조정할 수 있다.
- ④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이 개시된 자동차로서 사실상의 소유자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 연장자의 순서로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문 12. 「지방세법」상 지방소득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지방세법」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감할 수 없다.
- ② 「소득세법」,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비과세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지방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 ③ 「지방세법」 제103조의2제1항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공제세액 또는 감면세액이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

으로 한다.

④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103조의29, 제103조의52에 따라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 중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는 그 소득을 지급받는 사람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한다.

정답 12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을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문 13. 지방세법령상 재산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납기는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다.
- ② 납부통지서를 수탁자에게 고지한 후 재산세 납세의무자인 위탁자가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고지된 재산세에 대한 신탁재산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는 소멸한다.
- ③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의 납부할 세액이 950만원인 경우 500만원은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 분납하게 할 수 있다.

정답 13 ③

-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납기는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이고, 건축물의 경우에는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다.
- ② 수탁자에게 납부통지에 따른 고지가 있을 후 납세의무자인 위탁자가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포기 또는 이전하거나 신탁재산을 양도하는 등의 경우에도 고지된 부분에 대한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구분	분납세액
1. 납부할 세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2. 납부할 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의 납부할 세액이 950만원인 경우에는 500만원을 초과하므로, 그 세액의 50%인 475만원은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 분납하게 할 수 있다.

문 14. 지방세법령상 지방교육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지방세법」 제124조에 해당하는 자동차의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자는 지방교육세의 납세의무가 있다.
- ② 지방교육세를 납부하여야 할 자가 지방교육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납부함으로써 해당 세액에 가산세가 가산되었을 때에는 그 가산세액은 지방

교육세의 과세표준에 산입한다.

③ 지방교육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신고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에도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무신고가산세와 과소신고가산세·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 지방교육세는 「지방세법」 및 지방세감면법령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담배소비세액의 100분의 40을 그 세액으로 한다.

정답 14 ③

① 「지방세법」 제124조에 해당하는 자동차의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자는 지방교육세의 납세의무가 없다.

\* 지방교육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과 같다.

- |   |
|---|
| <ol style="list-style-type: none"><li>1. 부동산, 기계장비(자동차는 제외한다), 항공기 및 선박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납세의무자</li><li>2.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자동차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제외한다)의 납세의무자</li><li>3. 레저세의 납세의무자</li><li>4. 담배소비세의 납세의무자</li><li>5. 주민세 개인분 및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li><li>6. 재산세(재산세 도시지역분은 제외한다)의 납세의무자</li><li>7.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동차에 한정)을 제외한다]의 납세의무자</li></ol> |
|---|

② 지방교육세를 납부하여야 할 자가 지방교육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납부함으로써 해당 세액에 가산세가 가산되었을 때에는 그 가산세액은 지방교육세의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지방교육세는 「지방세법」 및 지방세감면법령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담배소비세액의 1만분의 4,399를 그 세액으로 한다.

문 15.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회사의 정리 또는 특별청산에 관하여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나, 법인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의 납입, 증자 및 출자전환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은 제외한다.

② 부동산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자의 신고에 따르나, 신고가 없거나 신고금액이 「지방세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③ 면허를 받은 후에 면허유효기간의 종료, 면허의 취소, 그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면허의 효력이 소멸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를 환급하지 아니한다.

④ 등록면허세의 과세대상인 등록에는 「지방세기본법」 제38조에 따른 취득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물건의 등기 또는 등록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정답 15 ④

등록면허세의 과세대상인 "등록"이란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 또는 등록은 제외하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나 등록은 포함한다.

- 가. 광업권·어업권 및 양식업권의 취득에 따른 등록
- 나. 외국인 소유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선박만 해당한다)의 연부 취득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
- 다. 취득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물건의 등기 또는 등록
- 라. 취득세 면세점(취득가액 5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물건의 등기 또는 등록

문 16. 「지방세법」상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지하자원에 대한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지는 광업권이 등록된 토지의 소재지이며, 광업권이 등록된 토지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광업권이 등록된 토지의 면적에 따라 안분한다.
- ② 흐르는 물을 이용하여 직접 수력발전(양수발전을 포함한다)을 하는 자는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
- ③ 지하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와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는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 ④ 행정기관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은 건축물에 대해 「지방세법」 제109조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더라도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한다.

정답 16 ①

- ② 흐르는 물을 이용하여 직접 수력발전(양수발전을 제외한다)을 하는 자는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
- ③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및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는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다만, 지하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액을 산정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징수한다.
- ④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건축물과 선박에 대해서는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문 17. 지방세법령상 담배 수입판매업자가 직전 연도의 월평균 담배소비세 납부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 장부에 적지 아니할 수 있는 사항이 있다. 그 사항으로 옳은 것은? (단, 수입판매업자는 지방세법령상의 요건을 충족함)

- ①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는 담배의 품종별 수량
- ② 도매업자와 소매인에게 판매한 담배의 해당 시·군별, 품종별 수량
- ③ 보세구역 내에서 소비된 담배의 품종별 수량
- ④ 훼손·멸실된 담배의 품종별 수량

정답 17 ②

기장의무 규정에 따라 담배 수입판매업자가 장부에 적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다만, 행

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수입판매업자(사업개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수입판매업자 또는 직전 연도의 월평균 담배소비세 납부액이 5억원 이하인 수입판매업자)의 경우에는 제2호의 사항을 적지 않을 수 있다.

1.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는 담배의 품종별 수량
2. 도매업자와 소매인에게 판매한 담배의 해당 시·군별, 품종별 수량
3. 보관되어 있는 담배의 보관 장소별, 품종별 수량
4. 훼손·멸실된 담배의 품종별 수량
5. 보세구역 내에서 소비된 담배의 품종별 수량
6. 그 밖에 담배의 수량 확인 등에 필요한 재고 및 사용수량 등

문 18. 지방세특례제한법령상 조례에 따른 지방세감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위임에 따라 지방세 감면을 하려면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및 제28조제2항에 따른 중과세의 배제를 통한 지방세 감면에 해당하는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없다.
- ④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감면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비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 18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감면(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의 위임에 따른 감면은 제외한다)을 하려면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문 19. 「지방세법」상 레저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지방세 특례는 고려하지 않음)

- ① 납세의무자가 「지방세법」 제44조에 따른 장부 비치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 ② 장외발매소에서 발매한 승자투표권·승마투표권 등에 대한 세액은 그 경륜장등(경륜장등이 신설된 경우는 제외)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100분의 80을 신고납부하고, 그 장외발매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100분의 20을 신고납부한다.
- ③ 과세표준은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 등의 당첨금총액으로 하며, 세율은 100분의 10으로 한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레저세의 세율을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정답 19 ①

- ② 장외발매소에서 발매한 승자투표권·승마투표권 등에 대한 세액은 그 경륜장등 소재지와 그 장외발매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각각 100분의 50을 신고납부한다. 다만, 경륜장등이 신설된 경우에는 신설 이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5년)까지 경륜장등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100분의 80을 신고납부하고, 그 장외발매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100분의 20을 신고납부한다.
- ③ 레저세의 과세표준은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 등의 발매금총액으로 하며, 레저세의 세율은 100분의 10으로 한다.
- ④ 레저세의 세율은 일정세율로서 조례로서 가감할 수 없다.

문 20.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 해당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은 취득세가 면제된다. 그 면제된 취득세의 추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해당 부동산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 ②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날에 수익사업에 사용한 경우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하지 아니한다.
- ③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 ④ 해당 부동산을 2년 이상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후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하지 아니한다.

정답 20 ②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지원대상 및 공익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복지법인등이 해당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li>1.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li><li>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li><li>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li></ul> |
|--|